

투자자문계약서

_____고객님
(계약일 : 년 월 일)

투자자문계약서

_____(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에이펙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자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회사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대해 고객에게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문수수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세부계약조건 내용은 [별지]에 따른다.

제3조(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다만, 적합성원칙에 의해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따라 투자대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증권
2. 자본시장법 제5조에 규정된 파생상품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
4.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등

제4조(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투자자문재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투자자문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매매방법,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경제동향,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요청 자료 제공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등

제5조(투자자문서비스의 제공방법)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

에 대면, 유선 또는 전자방식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반영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과 협의한 전자방식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6조(투자자문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투자자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회사는 계약 시 정하는 보수결정기준이나 자문수수료 외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기본수수료: 투자자문재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에서 정한 세부 계약조건에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 회 선취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증액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미경과 운용일수를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고, 중도해지시에는 선취한 기본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성과수수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

3. 중도해지수수료: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신의성실 위반 등 회사의 명확한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고객이 본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③ 투자자문수수료는 세부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별지]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④ 성과수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제7조(회사의 신의성실 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일반적 기준 및 절차) 세부사항은 [별첨 1]에 따른다.

제9조(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사전승인) 회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에 관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현재 당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별첨1]에 고지한 바와 같다.

제10조(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 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담당자는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 ①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과 주요경력은 [별첨 2]와 같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임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담당자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가 투자자문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현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
-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고객이 거래하는 계좌개설 영업점에 고객의 투자자산운용 계좌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13조(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된 투자자문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우편,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문재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5조(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3.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4. 투자권유자문인력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5.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에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6.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재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9.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0조 및 그 밖의관계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제16조(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7조(계약의 유효기간)

- ① 투자자문계약의 유효기간은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투자자문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객이 추가로 납부할 수수료 또는 회사가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지]에 따릅니다.
- ③ 계약기간 중 고객이 투자자문계약 자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빙(입·출금 거래내역서)을 회사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하며 이 증빙을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변경계약서로 인정됩니다.

제19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

- ① 회사는 투자자문업무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회사,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체계를 유지한다.
- ② 회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 평가한 결과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합니다.
- ④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인지토록 한다.

제22조(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세부사항은 [별첨 3]에 기재한다.

제23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관계법규 등의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고객)

고 객 명: (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회사)

회 사 명: 에이펙스자산운용

대 표 이 사: 최 웅 필 (인)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4, 11층

사업자등록번호: 365-88-02204